

사장후보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기본 역량

-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제시 능력
 - 최고경영자로서의 결단력, 리더십 및 위기관리 능력
 -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조직변화관리 및 비전제시 능력

-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 조직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
 - 최고경영자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조직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경험

-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 역량
 - 청렴성·준법성·도덕성 등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윤리의무를 준수하고 이에 솔선수범하는 경영마인드
 -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철학 및 실천능력

고유 역량

- 도로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 고속도로 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 고속도로 분야에 대한 깊은 인식과 비전을 가지고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등 전문적인 발전전략 수립 능력

- 공사의 경영현안 관리능력
 - 공사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경험·자질

응 모 결 격 사 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사유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 및 직무태만으로 인해 해임된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2. 공공기관의 상임이사가 이행실적 저조로 해임된 경우(공운법 제31조제7항)
3.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가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하여 해임된 경우(공운법 제35조제2항, 3항)
4.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감사, 감사위원이 직무수행 실적평가가 저조하여 해임된 경우(공운법 제36조제2항)
5. 공공기관이 제출한 계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감사 또는 감사 위원이 관련 직무를 불이행, 태만하여 해임된 경우 (공운법 제48조제4항)
6.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가 경영실적이 부진하여 해임된 경우 (공운법 제48조제8항)
7.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해임된 경우 (공운법 제52조의3)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